

서울특별시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73
------	----

1999년 6월 16일
총무재무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내용에 부합 하도록 명료하지않은 일부조문을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수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 제8조를 현행대로함.
- 제5제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를 “담당과장은 산업환경과장”으로 “담당계장은 담당업무주사”로 수정
- 제6조 제3항중 “서기에는 담당계장이 된다”를 “서기에는 담당업무주사”로 수정

3. 수정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를 “담당과장은 산업환경과장”으로 “담당계장은 담당업무주사”로 수정한다.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제3항중 “서기에는 담당계장이 된다”를 “서기에는 담당업무주사”로 수정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기타부분은 시초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음)

